

인천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나7438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17.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9. 30. 선고 2021가소208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7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강원 홍천군 C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으로 7,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70%가량 진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830만 원만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위 공사대금의 70%에 해당하는 4,900만 원 중 원고에게 지급한 2,8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07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상당의 2,0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70%가량을 진행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년경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8가소889호로 공사대금 2,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4. 2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균, 판사 김지향, 판사 김현진